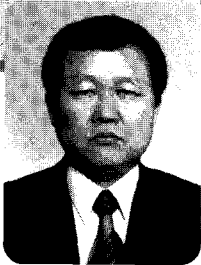




전자출원 시대의 개막에 따른 포괄위임장 제도(2)



송 재 기
특허청 정보기획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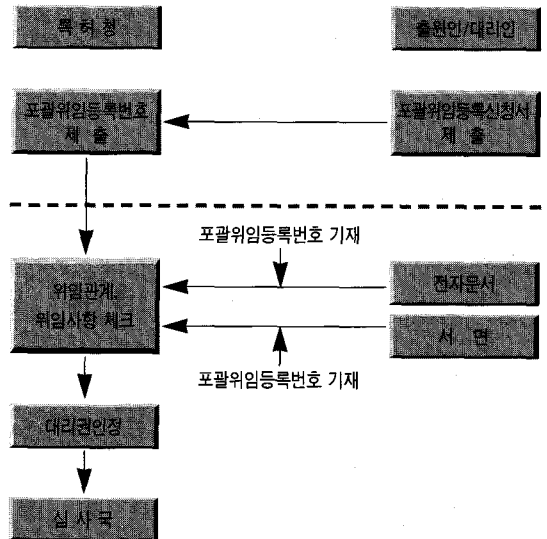
III. 제도의 내용

1. 처리 절차

목 차

- I. 서론
- II. 국제동향
- III. 제도의 내용
- IV. 특별 수권 사항과 포괄위임
- V. 결론

< 고딕은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



등록 및 변경관련 서식(포괄위임 등록신청서, 포괄 위임 등록철회서, 포괄위임 원용제한신고서)은 서면 으로부터 제출토록 하고 서식이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반려처리 하게된다.

등록 및 변경은 전자출원이든 서면출원이든지 공

통적으로 출원인/대리인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이 출원인/대리인 등록을 한 후 포괄위임 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포괄위임등록신청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포괄위임장이 접수되고, 방식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특허청은 제출자에게 즉시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통지한다.

우편접수인 경우 반려사유 존재 시 반려통지서(결재 후 발송)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접수증을 부여받은 후 모든 출원서류 및 중간서류의 제출시 종래의 위임장 대신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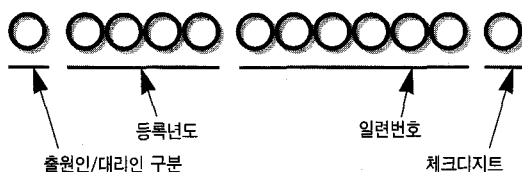
2. 포괄 위임의 범위

등록 대상자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모든 출원인이며, 포괄위임의 범위는 하나의 포괄위임장에 산업재산권 4권의 출원 및 등록, PCT지정관청출원, 사정계심판에 적용된다.

현재, 이의신청 및 당사자계심판은 제외되어 있으나 특허청은 포괄위임등록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에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심판, 이의신청 제기, PCT지정관청출원등은 대리의 성격이 상이하고 중복 가능성이 많아 시행시 업무혼잡 및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의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3. 코드 체계 및 적용 범위

(포괄위임등록번호코드의 구성(11자리의 숫자))



① 포괄위임등록번호 부여 기본원칙
출원인/대리인 1:1관계에 하나의 번호만 허용한다. 따라서 하나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복수의 대리인을 기재할 수 없다.

② 포괄위임 마스터의 등록사항

- 등록번호 : 신청인 성명 및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련사항
- 선임대리인 : 신청인 등록번호(변리사) 및 주소 또는 거주지 관련사항
- 위임사항
- 위임장 : 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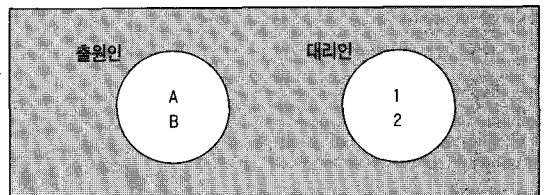
③ 공동 출원의 경우

공동출원시 포괄위임의 인정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AND 조건의 만족 시에만 인정한다면 아래의 그림에서 A-1, A-2, B-1, B-2 의 모든 관계에 포괄위임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게 된다.

AND 조건 + α 가 만족될 때 인정해 준다면, 출원인 A, B가 공동출원을 할 경우에는 $\{A+B\} - \{1+2\}$ 간의 포괄위임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다. OR 조건만 만족된다면 인정이 가능하다면, A-1, B-2의 관계에만 포괄위임관계가 있어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

현재 우리의 제도는 출원인 및 대리인이 2인 이상일 경우 OR 조건만 만족하면 포괄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 포괄위임 등록번호 2개를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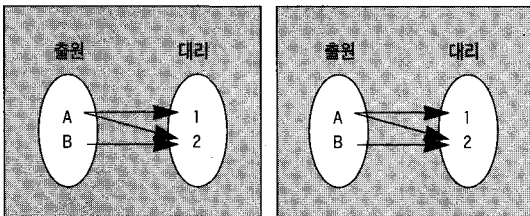
(포괄위임 등록번호 부여의 예)





출원인	대리인	포괄위임등록번호
A	1	A11
A	2	A12
A	2	B12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등록번호 기재의 예]



⇒ 1)의 경우 포괄위임등록번호 A11, A12, B12에 기재
 2)의 경우 포괄위임등록번호 A11, B12 기재

④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새로운 포괄위임등록 신청으로 포괄위임등록번호 부여하고, 복대리인이 출원서 및 중간서류 제출 등 복대리 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여된 새로운 포괄위임등록번호 사용한다. 단, 이때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권한 내에서만 대리행위가 가능하다.

⑤ 개별위임의 인정 여부

포괄위임을 하지 않고 기존의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개별위임으로 간주한다. 포괄위임제도는 어디까지나 전자출원 시대의 개막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⑥ 보정 통지와 포괄위임장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본질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보정으로 그 결함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불수리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때 보정기간은 재내자, 재외자 모두 2월 이내로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이때 전자 출원을 한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포괄위임장등록신청서와 함께 포괄위임장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하면 되며, 3일이 경과하면 보정통지가 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 출원 이전에 이루어진 출원에 대해 위임장 미첨부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현재 포괄위임장등록신청서와 함께 포괄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전의 보정통지까지 치유가 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위임은 본인과 대리인간의 1:1 관계로서 현재와 장래의 사건에 대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전의 보정통지까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정통지에 대해서도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포괄위임장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하겠다.

4. 포괄위임등록방법

출원인 및 대리인이 출원인 코드/대리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 포괄위임장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에 의해 사전 신고하면 대리인 및 위임사항을 확인한 후 포괄위임등록을 한다. 출원인/대리인 코드 부여후 포괄위임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특허청 승인(포괄위임사항 입력 및 등록번호 부여)을 받으면 출원서 및 중간서류 제출시 종래의 위임장을 대신하여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하나의 포괄위임장에는 산업재산권 4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의 위임사항을 동시에 기재가 가능하다. 포괄위임이 등록되면 제출자에게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통지하게 된다. 포괄위임등록번호는 FD 또는 서면출원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5. 포괄위임 등록번호 운영방법

대리인은 출원서 및 각종 중간 서류 제출시 종래의

[참고 : 포괄위임등록 서식 내역]

서 식 명	내 용
포괄위임장	- 위임인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포괄위임등록신청서	- 포괄위임장은 포괄위임장 제출서의 첨부 물건으로 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 이 경우 제출자는 위임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어느 쪽도 좋다.
포괄위임장 원용제한 신고서	- 포괄위임장 원용제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특정한 개별사건에 관하여, 포괄위임자의 원용을 제한한다.
포괄위임장 철회서	- 포괄위임장 철회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 - 포괄위임장 철회서 제출 전에 성립된 개별절차에 관해서는 대리관계가 존재한다. - 철회서 제출전의 절차에 관해서도 대리관계를 소멸시키려면 개별 사건마다 대리인의 해임 혹은 사임 제출이 필요하다.

위임장을 대신하여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및 오기제시는 방식심사단계에서 보정 통지한다.

포괄위임등록정보의 위임자 및 대리인의 코드번호는 출원인 및 대리인코드와 동일하고, 출원인(대리인) 등록정보인 성명(명칭), 주소, 인감 등을 변경(경정)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포괄위임등록정보의 내용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포괄위임등록번호는 FD 또는 서면출원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출원개시 초기의 업무폭주를 예방하고, 시행초기 온라인 출원율의 제고를 위해서 '98. 10월부터 사전등록을 실시하도록 장려했다.

6. 관련서식 운영방법

포괄위임등록관련 서식(포괄위임장 포함)은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고,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서식이 방식에 위배된 경우 이를 반려 처리한다. 왜냐하면 포괄위임 데이터는 MASTER 데이터로서 보정을 인정할 경우 전 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등 전자출원시스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7. 포괄위임의 원용제한 및 철회

(1) 포괄위임의 원용제한

포괄위임원용제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특정한 개별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장의 원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포괄위임 관계를 철회할 경우

본인이 대리인과의 포괄위임 관계를 철회할 시에는 복대리인과의 포괄위임 관계도 자동 소멸된다. 그러나 대리인이 사임하는 경우 복대리인은 존치된다.

(3) 포괄위임 등록 철회

포괄위임 등록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포괄위임 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동일 대리인에 대하여 위임사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 등록된 포괄위임을 철회하고 새로이 포괄위임 등록하여야 한다.

(4) 본인 사망시

포괄위임번호는 삭제되고 승계인과 대리인간에 새로운 포괄위임 번호를 부여한다. 발특9903